

고 15호

기안용지

문류기호 문서일호	도시 415	전화번호	318	선결규정	조항
처리기관	도시계획국	시	자치	선결사항	
시행일자	73. 9. 22	선결		결재 1973 9 21 제2부장	
보존년한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가로계획계장	법무담당관 (리안심사) 시민과장 도시관리계장 총괄계획계장			
기안책임자	이평재	조근조	조근조		
경유수신참조	각안참조	발신	통계	검열 1973 9 21 서울특별시 민간문서	

제 목 서울 도시계획 소로 일부 변경

개안

수신 내부 결재

1. 양시 관내 관악구 봉천동지내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73. . .)로 국비하고 시설부지로 결정된 학교 시설부지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소로를 변경 도면 표시와 같이 학교시설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변경 사유가 있으며
2. 건설국장으로 부터 대방천. 삼류. 지점이 하천. 용작물

경계
318
판인
발송

설치 허가에 의하여 복개된 복개전과 도시계획선이 상이 함으로 기 복개된 현황대로 계획선 변경 요청이 있으므로 복개 현황대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3. 성곡주 석완동 지니 및 도봉주 삼동동지니 도시계획 도로이며 폐지 별첨 옥영지와 같이 일부 변경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전월부 도시 제 123호 (73. 4. 4) 의 권한 기인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안

도시안심사	1973. 9. 21	제 83호
심사자	법제국장	법무국장

고 시 안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

1. 당시 판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 하얏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전월부 도시 제 123호 (73. 4. 4) 에 의하여 이를 고 합니다.

2. 판내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촉 도시계획과의 판내 구정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급합니다.

1973. 9.

서울특별시 장

노선 변경 조서

구분	등급	특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정	종 점	비 고
기정	도로	2		8m	136m	봉천동 698~14	봉천동 690-3	
변경	"	"		"	160m	봉천동 698~14	봉천동 695~4	주변학교 시설로 인한 위치 변경

기정	소로	3	6 ^m	270 ^m	상.도중 169-6	상.도중 29-2 앞	
변경	"	"	"	"	상.도중 169-6	상.도중 29-2 앞	하권측개선이 마무리 위치변경
기정	소로	2	8 ^m	52 ^m	상.도중 315-30 앞	상.도중 315-29	
변경	"	"	"	60 ^m	상.도중 315-30 앞	상.도중 315-29 앞	노선 연장
기정	소로	3	6 ^m	295 ^m	석.관동 338-520	석.관동 340-289 앞	
변경	"	"	"	300 ^m	석.관동 338-520	석.관동 340-289 앞	호환선에서 마무리 위치변경

별첨 도면 도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제3안

수신 건설부장관

발신 시장

제목 용건

1. 당시판내 도시계획 소로를 도시계획변경 제12조 및 제13조와 건
설부 고시 제123호 (부. 4. 4) 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제4안

수신 홍무취장관 (서울시: 공보실장)

발신 시장 (과장)

제목 관(시)보 게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관(시)보에 게재 의뢰 하오니 관(시)보에 게
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 구분 : 고시

나. " " " 건명 : 도시계획소로 일부 변경:

다. 법규 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철부 고시문 사본 2매

제5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시장

제목 등 건

1. 커우판내 도시계획 사항이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 도면 정리하는 등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 도시계획 업무처리에 착수 없도록 할 것.

철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수신처 성북구청장 노봉주청장. 관악구청장

제6안

수신 건설국장

발신 국장

제목 등 건

1. 시판 449~4402 (73. 8. 26) 에 관련입니다.

2. 본건에 대해서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변경하였기 통보 하오니 관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수신처 성북구청장 노봉주청장. 관악구청장

제7안

수신 시내 성북구 석관동 338-260호 이 수 행.

제목 등 건

1. 도시 125.1-0837 (73. 8. 31) 와 관련하여 본건에 대해서는 커우의 의견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특 경 서

시내 석관동 338의 260번지 앞 및 양문동 315의 10번지 부근에 면하여
야간의 같은 소로 일부 변경 사유가 발생 하였기 보고 합니다.

1. 사유

가. 위치 : 석관동 338의 260 번지 앞

나. 현황 : (1) 상복구 석관동 338의 260 거주 이수행으로
부락동 지반을 가로 계획선 조성 권의가 있어 검토한바

(2) 동 번지 부근은 당초 임야로 상태에서 소로
광을 계획 하였던 것이나 주변지역의 개발됨에 따라 임야가 신규등록에 의거
지적분할 되었으며

(3) 분할된 소로망에 의거 6미터 도로가 확보는
되었으나 지적의 작포에 의한 도강선의 차이등으로 임야로 상태의 소로망과
지적(신규등록된) 도의 상이함이 확인 되었음.

다. 처리의견

신규등록되어 이용되고 있는 현재 6미터 도로에 맞추어 계획선
조정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됨.

2. 사유

가. 위치 : 도봉구 상문동 118의 10번지

나. 현황 : 상기 지반은 창동토지구획경리 사업 지구 계에
접한 토지로서 72.12.9자 서울특별시 고시제 27호 로 본지구 가로망 확정
시 누락되어 본지구 획정비 사업지구내 도로와 연결되지 않음이 확인 되었음

다. 처리의견

기포광 계통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가로와 기포시
된 가로(지구외)와 연결시행함이 기합거으로 식료됨.

1973. 9. .

지방토목기사 양 규 송

서울특별시감

귀하

서울특별시

시관 415-4485 (73. 6. 26)
 수신 도시계획국장
 참조 도시계획국장
 제목 마천공작물 증척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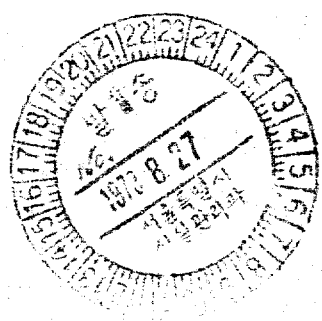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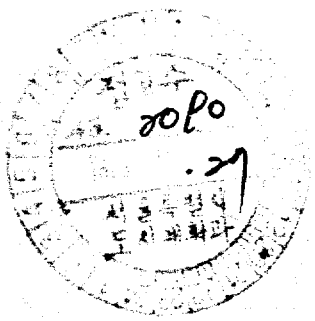
73. 6. 26

1. 도시 415-4485(73. 6. 17) 이 권하여

2. 향동구 봉곡동 204번지 신중권의 허가를 받아 이미 공작물이 축조되어 있는 관악구 상동동 169-31 지번 마천공작물 증척공사에 관련된 도시계획신 일부 변경의 관계도면을 보완 송부함에 공작물이 이미 축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직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신 변경이 불가할 때는 한상대로 양여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도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도면 1부. 끝.



국립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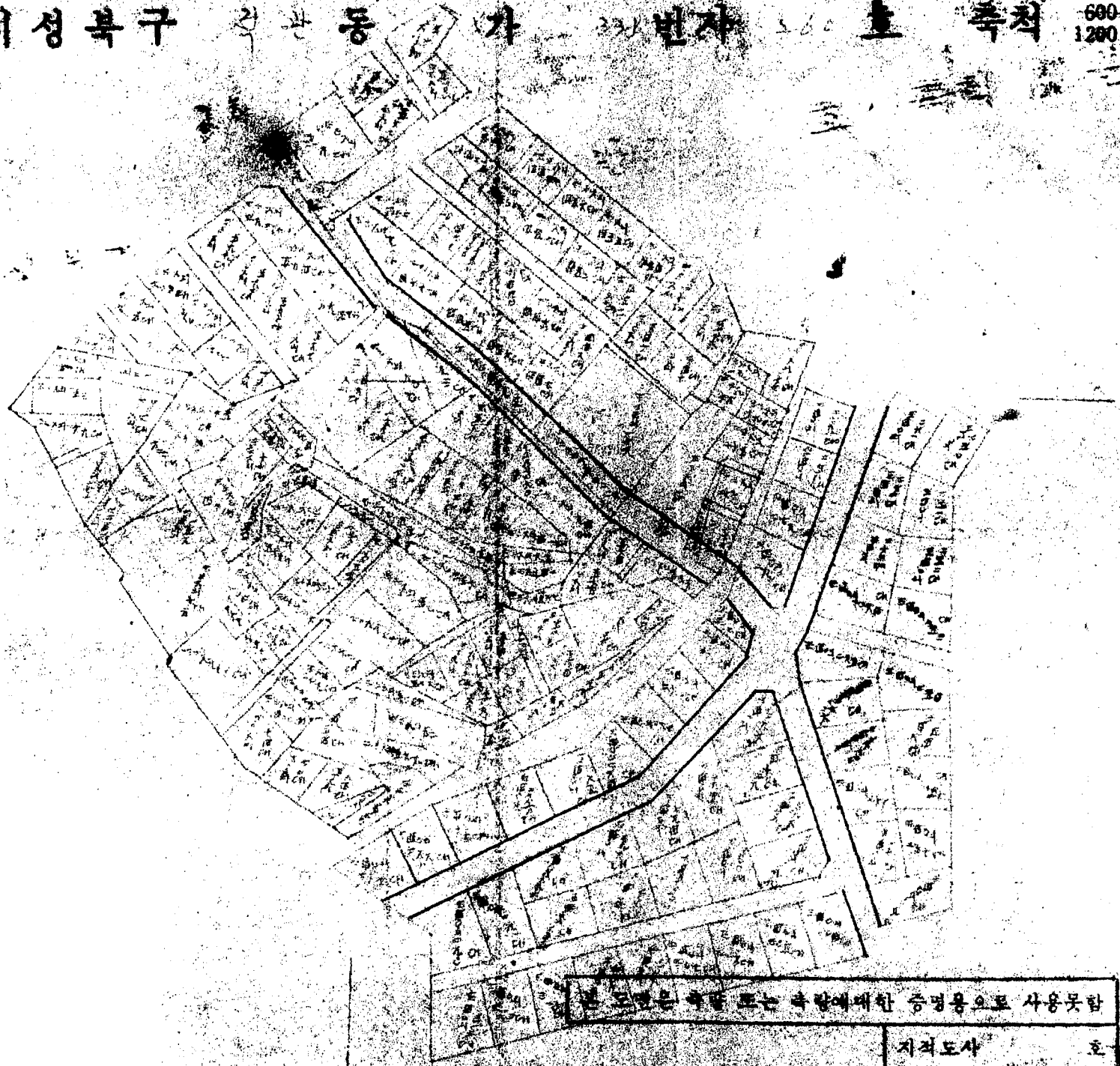
계	조경국장	재개발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유상							

67-3642 홍 광 동

지 적 도 사

지적도계 14-2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 동 가 331 번지 36 호 축척 600 분지 1



본 도면은 축척 또는 축척에 대한 증명용으로 사용못함

지적도사 호

서기 1972년 8월 1일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 동 가 331 번지 36 호

지적도사 호